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12. 1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1월 7일

나. 발의자: 우경란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우경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여가활동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, 모범경로당을 선정·확대함으로써 경로당 기능을 혁신하고 건강한 노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 경로당 선정 근거 신설(안 제12조)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

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이와 함께 노인들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.

- 특히 은퇴 이후 사회적 활동이 줄고 신체활동이 감소할 경우 근력 저하와 고립감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정서적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, 일상 속에서 노인들이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 마련이 중요함.
- 경로당은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노인 여가·복지시설로서,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신체활동 촉진, 사회적 유대 강화, 정서적 안정 등 다기능 복지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·표창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,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2조(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)는 신설 조항으로, 구청장이 연 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모범경로당을 선정·표창할 수 있도록 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, 경로당 운영평가와 모범경로당 표창 근거를 신설함.
 - 이를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신체·정서·사회적 기능을 지원하는 지역복지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우경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54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1. .

발의자: 우경란 · 차인영 · 최봉희
임현호 · 이규선 · 최인순
이성수 · 정선희 의원(8인)

1. 제안이유

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여가활동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,
모범경로당을 선정 · 확대함으로써 경로당 기능을 혁신하고 건강한
노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 경로당 선정 근거 신설(안 제12조)
- 나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3항 중 “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”을 “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)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평가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모범경로당을 선정 및 표창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8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의2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8조 제2항-----</p> <p>--.</p> <p><u>제12조(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)</u>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평가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모범 경로당을 선정 및 표창 할 수 있다.</p>
<p><u>제12조 · 제13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13조 · 제14조</u> (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)</p>